
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대출 대환 신청서 및 약정서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

제출일 : 20 년 월 일
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대출/의료대출/재해대출로 대환신청합니다.

○ 계약자 정보

인 적 사 항	계 약 자		주민등록번호	
	사업체명		공제계약번호	
	주 소			
	휴대번호		E-mail	

○ 대환대출 신청

대출 종류			
대환대출 신청액	금	원 (₩)

- ※ 대출한도는 납부부금 합계액과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%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, 대출한도 내에서 의료대출은 최대 1천만원, 재해대출은 최대 2천만원과 재해확인서상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
- ※ 대출금은 10만원 단위로 하며 대출한도에서 기 대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※ 대환이 결정된 경우 기존 대출금을 신규 1건으로 통합하며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○ 계약 내용 변경 신청

구분	신청 내용		
대출계좌	거래은행		
	계좌번호		
이자수납일	매월 () 일		

○ 기존대출 상환신청

No	대출일자	대출금액	대출이율	연체여부	상환신청
1					
2					
3					
4					

약 정 서	<p>제1조(대출신청자격)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계약자가 공제계약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금납부를 미납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2조(대출기간) 대출기간(대출실행일의 다음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)은 일반대출은 1년, 의료대출은 1년, 재해대출은 2년으로 하며, 기간내에 대출금이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대출기한이 연장됩니다.</p> <p>제3조(상환방법) 대출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,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.</p> <p>제4조(대출이자) ①일반대출의 대출이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일자(이하 “이자납부일”이라 한다)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, 대출일이 해당한 월의 다음 월부터 최초 납입합니다. ②이자납부일이 경과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미납이자를 대출 원금에 합산하고 그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상기의 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. ③미납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납부일마다 재청구합니다. ④대출시행후 대출이자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합니다. ⑤대출이자의 계산방법 및 이자율 등은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출이율은 노란우산 홈페이지(www.8899.or.kr)-공제소개-기준이율공시-대출이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 ⑥의료대출과 재해대출의 대출이자는 최초 대출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하며, 최초 대출기간내 미상환시 연장시점부터는 일반대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.</p> <p>제5조(기한의 이익 상실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중앙회는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미납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하면 계약자는 중앙회에 대한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일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계약자는 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.</p>
-------------	---

